
달라스중앙감리교회 내부 규칙

Dallas Central Methodist Church
Bylaws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총칙.....	6
제 1 조 교회의 명칭과 위치.....	6
제 2 조 교회의 목적.....	6
제 3 조 교회의 소속.....	6
제 4 조 교회의 법인등록.....	6
제 2 장 교인.....	7
제 1 조 교인의 자격.....	7
제 2 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7
제 1 항 교인의 의무.....	7
제 2 항 교인의 권리.....	7
제 3 조 교인의 구분.....	8
제 4 조 교인의 자격정지.....	8
제 5 조 교인의 자격복권.....	8
제 3 장 평신도 신령직제.....	9
제 1 조 제정근거와 정신.....	9
제 2 조 집사.....	9
제 1 항 집사의 임직.....	9
제 2 항 집사의 자격.....	9
제 3 항 집사의 직무.....	9
제 4 항 집사의 이명.....	9
제 3 조 권사.....	9
제 1 항 권사의 정원.....	9
제 2 항 권사의 임직.....	10
제 3 항 권사의 자격.....	10
제 4 항 권사의 직무.....	10
제 5 항 권사의 선출.....	10
제 6 항 권사의 이명.....	10
제 7 항 권사의 은퇴.....	11

제 4 조 장로.....	11
제 1 항 장로의 정원.....	11
제 2 항 장로의 자격.....	11
제 3 항 장로의 직무.....	11
제 4 항 장로의 선출 및 임직.....	11
제 5 항 장로의 이명.....	12
제 6 항 장로의 임기.....	12
제 4 장 담임목사, 평신도대표, 연회대표, 교회법인대표단	13
제 1 조 담임목사.....	13
제 1 항 담임목사의 역할.....	13
제 2 항 담임목사 파송과 자문 과정.....	13
제 2 조 평신도대표.....	13
제 1 항 평신도대표의 역할.....	13
제 2 항 평신도대표의 선출과 임기	14
제 3 조 연회대표.....	14
제 1 항 연회대표의 역할.....	14
제 2 항 연회대표의 선출과 임기	15
제 4 조 교회법인대표단.....	15
제 5 장 조직.....	16
제 1 조 교회임원회.....	16
제 1 항 교회임원회의 역할.....	16
제 2 항 교회임원회의 책임.....	16
제 3 항 교회임원회 회장.....	16
제 4 항 교회임원회의 조직.....	17
제 5 항 교회임원회 회의시기.....	17
제 6 항 교회임원회 회의운영.....	17
제 2 조 인선공천위원회.....	18
제 1 항 인선공천위원회의 역할.....	18
제 2 항 인선공천위원회의 책임.....	18
제 3 항 인선공천위원의 선출과 임기	18

제 4 항 인선공천위원회의 조직.....	18
제 3 조 목회협조위원회.....	18
제 1 항 목회협조위원회의 역할.....	18
제 2 항 목회협조위원회의 책임.....	19
제 3 항 목회협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19
제 4 항 목회협조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20
제 5 항 목회협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20
제 6 항 담임목사 및 유급직원 협조.....	20
제 4 조 재정위원회.....	20
제 1 항 재정위원회의 역할.....	20
제 2 항 재정위원회의 책임.....	21
제 3 항 재정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21
제 4 항 재정위원회의 조직.....	21
제 5 조 재단이사회.....	21
제 1 항 재단이사회의 역할.....	21
제 2 항 재단이사회의 책임.....	22
제 3 항 재단이사회 선출과 임기	22
제 4 항 재단이사회의 조직과 운영	22
제 5 항 재단이사회와 다른 부서와의 관계	22
제 6 항 유증 및 신탁재산 관리	23
제 7 항 보험.....	23
제 8 항 부동산구입 및 처분, 교회건물, 교육관, 목사주택 건축.....	23
제 9 항 법적 책임.....	23
제 10 항 재단이사회장의 선출과 임기	24
제 6 장 부서조직.....	25
제 1 조 재정부.....	25
제 1 항 운영의 원칙	25
제 2 항 수입.....	25
제 3 항 회계년도.....	25
제 4 항 회계의 운영 및 관리.....	26

제 5 항 재정 관련 서류 보존 기한	26
제 6 항 예산	26
제 7 항 재정부장	26
제 8 항 부서운영	26
제 2 조 건물관리부	26
제 1 항 건물관리부의 역할	26
제 2 항 건물관리부의 책임	27
제 3 항 관리의 대상	27
제 4 항 건물관리부장의 선출과 임기	27
제 3 조 예배부	27
제 1 항 예배부의 역할 및 책임	27
제 2 항 예배부장의 선출과 임기	28
제 4 조 교육부	28
제 1 항 교육부의 역할	28
제 2 항 교육부의 책임	28
제 3 항 교육부장의 선출과 임기	28
제 5 조 통합선교부	29
제 1 항 통합선교부의 역할	29
제 2 항 통합선교부의 책임	29
제 3 항 통합선교부의 구성	29
제 4 항 선교부장의 선출과 임기	29
제 6 조 새가족부	30
제 1 항 새가족부의 역할 및 책임	30
제 2 항 새가족부장의 선출과 임기	30
제 7 조 바나바부	30
제 1 항 바나바부의 역할 및 책임	30
제 2 항 바나바부장의 선출과 임기	30
제 8 조 홍보부	31
제 1 항 홍보부의 역할	31
제 2 항 홍보부의 책임	31

제 3 항 홍보부장의 선출과 임기	31
제 9 조 체육부.....	31
제 1 항 체육부의 역할 및 책임	31
제 2 항 체육부장의 선출과 임기	31
제 10 조 음악부.....	32
제 1 항 음악부의 역할 및 책임	32
제 2 항 성가대원과 찬양단원의 책임과 의무	32
제 3 항 음악부장의 선출과 임기	32
제 11 조 봉사부.....	32
제 1 항 친교봉사부의 역할 및 책임.....	32
제 2 항 친교봉사부장의 선출과 임기	32
제 12 조 교구섬김부.....	33
제 1 항 속회의 역할과 조직	33
제 2 항 목적과 기능.....	33
제 3 항 속장의 의무와 자격	33
제 4 항 속교사의 의무와 자격	33
제 5 항 교구장의 의무와 자격	33
제 6 항 교구섬김부장의 선출과 임기	34
제 13 조 브릿지미니스트리부.....	34
제 1 항 목표.....	34
제 2 항 정책.....	34
제 3 항 운영.....	35
제 7 장 부칙	36
제 1 조 심의규정.....	36
제 1 항 예외규정	36
제 2 항 내규 개정 또는 수정	36
제 3 항 발효.....	36
제 2 조 각 부서 내부 규정	36
제 3 조 의결정족수.....	36
제 4 조 교인총회와 교인투표.....	36

제 1 장 총칙

제 1 조 교회의 명칭과 위치

본교회는 달라스중앙감리교회라 칭하고 3800 Carbon Rd., Irving, TX 75038 에 위치한다.

제 2 조 교회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로서, 성경의 말씀대로 배움과 훈련으로 새롭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목적이다.

1. 사명선언문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선교공동체), 말씀으로 양육하여 (양육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공동체), 성도들을 섬기며 (섬김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빛과소금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2. 결혼의 정의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부부관계로 이루어지는 법적이고 영적인 기관임을 믿는다. (창세기 2:24, 에베소서 5:22-33, 마가복음 10:6-9, 고린도전서 7:1-9)

제 3 조 교회의 소속

본교회는 Global Methodist Church (GMC)에 속한다.

제 4 조 교회의 법인등록

본교회는 미 텍사스 주법에 의해 등록한다.

제 2 장 교인

교인은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과 믿음을 고백한 이들을 포함한다.

1. 교회의 세례교인은 본교회 또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 또는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본교회에 교적을 옮겨 온 사람들을 포함한다.
2. 교회의 고백교인은 적절한 세례의식을 통하여 신앙고백하였거나 다른 교회에서 이적하여 와서 교인이 된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을 포함한다.

제 1 조 교인의 자격

1.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거룩한 공회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이
2.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를 주님이시요, 구속자로 고백하는 이
3. 모든 예배와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성례를 받는 이

제 2 조 교인의 의무와 권리

제 1 항 교인의 의무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 개인의 신앙 향상과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힘쓴다.
2. 올바른 헌금 생활(십일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등)로 교회의 재정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의 사업에 기여한다.
3. 개인의 시간과 은사를 바쳐 교회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교회질서(치리)에 순종한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충성을 다하며,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절로 봉사해야 한다.
5.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교회에 충성하며, 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야 한다.
6. 기도와 출석과 봉사와 증언을 함으로써 사역에 충실히 참여한다.
7. 신,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한다.

제 2 항 교인의 권리

1. 본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든 교회 행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교회의 돌봄과 양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능력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
4. 정회원이 된 성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3 조 교인의 구분

- 정회원: 본 교회 등록후 6 개월 이상 출석한 18 세 이상된 세례 교인이나 입교인
- 준회원: 유아세례를 받은 자나 아직 입교하지 않은교인
- 소속회원: 다른교회(감리교회)의 성도가 일시적으로 참여해 교회생활을 하는 이
- 협동회원: 타교단에서 이명 온 정회원 자격의 성도로서 정회원이 되기 전 협동회원으로 일할 수 있다.

교회는 정회원 명단을 정리하여 보관하고 매년 4 사분기중 교회임원회에 보고한다.

제 4 조 교인의 자격정지

1. 사망 또는 전출 등의 사유가 생겼을때 자격이 정지된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교회를 떠나 2 년 이상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자격이 정지된다.
3. 교인의 신분을 망각하고 부덕한 생활을 하거나 교회에 부덕한 문제를 일으켰을때 임원회 심의를 거쳐 교인총회에 재석 2/3 의 찬성으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5 조 교인의 자격복권

등록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후 사안에 따라 임원회 심의를 거쳐 교인총회에 재석 2/3 의 찬성을 얻어 자격을 복권할 수 있다.

제 3 장 평신도 신령직제

제 1 조 제정근거와 정신

달라스중앙감리교회는 GMC 장정을 존중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의 평신도 직제를 정하되 이는 신령상의 직제로서 아래와 같은 운영세칙에 따라 직제를 세워 운영한다.

제 2 조 집사

교회는 집사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제 1 항 집사의 임직

집사는 운영세칙에 의하여 집사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임원회에서 인준을 받아 집사교육을 받은 후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 2 항 집사의 자격

1. 입교인이 된지 2년 이상 된 이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를 받은 이
3. GMC의 교리와 규칙을 잘 알고 지키는 이
4.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에 모범이 되는 이

제 3 항 집사의 직무

집사는 담임목사를 도와서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예배, 선교, 전도, 교육, 봉사, 재정관리 등 교회의 직무를 분담 봉사 한다.
2. 교회의 모든 집회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된다.
3.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에 평신도의 모범이 된다.

제 4 항 집사의 이명

다른 교회에서 이명해 온 집사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 계속 집사로 봉사할 수 있다.

1. 본 교회에 등록된 후 6개월 이상 교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집사 교육을 담임목사 또는 담임목사가 위임한 사역자의 지도하에 이수해야 한다.

제 3 조 권사

교회는 권사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제 1 항 권사의 정원

권사는 입교인 15명에 1명 비율로 세울 수 있다. 단, 입교인이 15명에 미달인 경우에도 1명의 권사를 세울 수 있다.

제 2 항 권사의 임직

교인투표에서 권사후보로 피택 받아 GMC 과정고시와 품행심사에서 통과된 이는 권사 임직식 후 권사로 임직한다. (임직식은 매해 창립주일에 시행한다.)

제 3 항 권사의 자격

1. 집사 된 지 3년 이상 되고 연령은 만 40세 이상 된 이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를 받은 이
3. GMC의 교리와 교칙을 준수 하는 이
4.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과,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에 참석하는 자로 평신도의 모범이 되는 이

제 4 항 권사의 직무

권사는 담임목사를 도와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성수주일과 십일조 봉헌생활에 평신도의 모범이 된다.
2. 교회의 모든 집회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된다.
3.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하며 속회를 분담, 인도, 육성한다.
4.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교우 심방, 낙심자 권면, 불신자 전도를 한다.
5. 권사는 교회 부서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제 5 항 권사의 선출

아래의 절차에 따라 권사를 선출한다.

1. 권사 후보는 운영세칙에 의하여 권사 자격을 갖춘 이로서 인선공천위원회의 4/5 이상의 찬성을 얻어 추천을 받아 교인투표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교인투표에서 권사 후보로 피택된 이는 GMC가 실시하는 과정고시와 품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제 6 항 권사의 이명

다른교회에서(감리교회) 이명해 온 권사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계속 권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권사증서를 제시하거나 이전 교회로부터 권사 이명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여 신실하게 교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교단에서 권사나 안수집사가 된 이들은 아래의 이명절차를 밟아 계속 권사로 봉사할 수 있다.

1. 권사증서를 제시하거나 이전 교회로부터 권사 이명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 이상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여 신실하게 교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임원회의 무기명 투표로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권사로 봉사한다.

제 7 항 권사의 은퇴

권사로서 연령이 65 세 이상 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70 세에는 정년 은퇴한다.

제 4 조 장로

교회는 장로를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기게 할 수 있다.

제 1 항 장로의 정원

장로는 입교인 30 명에 1 명의 비율로 세울 수 있다. 단, 입교인이 30 명에 미달인 경우에도 1 명의 장로를 선출할 수 있다.

제 2 항 장로의 자격

1. 권사로 5 년 이상 본교회를 섬긴 이로서 온 가정이 지속적으로 본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실한 이 (단, 자녀는 예외 할 수 있다.)
2.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세례를 받았으며 연령이 만 45 세 이상이고 60 세 이하인 이 (단, 교회의 상황에 따라 연령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인선공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예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 생활과 전도생활에 평신도의 모범이 되는 이
4. 교회의 모든 예배(수요예배와 금요일예배 포함)와 집회에 충실히 참석하며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이
5. 담임목사의 목회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며,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는이
6. GMC 교리와 장정을 잘 알고 지키는 이
7. GMC 장로교육을 이수하고 장로고시에 합격한 이

제 3 항 장로의 직무

장로는 담임목사를 도와 아래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 담임목사를 도와 교인생활의 모범이 된다.
2. 교회의 모든 집회와 행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은혜 받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모범이 된다.
3.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속회를 분담, 인도, 육성한다.
4. 담임목사의 지도 아래 교우 심방, 낙심자 권면, 불신자 전도를 하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깊은 관심을 갖는다.
5. 담임목사의 요청에 따라 예배와 성례 및 목회사역을 보좌한다.
6. 성수주일과 온전한 십일조 봉헌생활, 전도생활, 교회봉사에 평신도의 모범이 된다.
7. 교회의 재정유지에 힘쓴다.

제 4 항 장로의 선출 및 임직

1. 장로후보는 인선공천위원회의 3 번 이하의 투표에서 4/5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을 받아 교인투표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2. 장로후보로 피택된 이는 GMC 가 제정한 장로과정고시와 자격품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3. 장로의 임직식은 달라스중앙감리교회의 주관으로 시행하되 임직증서를 수여하고 장로로 임직한다. (임직식은 매해 창립주일에 시행한다.)

제 5 항 장로의 이명

다른교회에서(감리교회) 이명해 온 장로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계속 장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장로증서를 제시하거나 이전 교회로 부터 장로 이명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교회에 등록된 후 1 년 이상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여 신실하게 교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타교단에서 이명해 온 장로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계속 장로로 교회를 섬길 수 있다.

1. 장로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본 교회에 등록된 후 1 년 이상 모든 예배와 집회에 출석하여 신실하게 교인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 GMC 의 장정과 교리와 역사를 담임목사의 지도하에 이수해야 한다.
4. GMC 의 장로과정 고시와 자격품행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5.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원회와 교인투표에서 무기명 투표로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 6 항 장로의 임기

1. 장로의 임기는 7 년이고 재임할 수 있다.
2. 장로로서 연령이 65 세 이상 된 이는 자원 은퇴할 수 있으며, 70 세에는 정년 은퇴한다.

제 4 장 담임목사, 평신도대표, 연회대표, 교회법인대표단

제 1 조 담임목사

담임목사는 정회원 목사들의 투표로 성직위임을 승인받은 사람으로서 GMC로부터 교회에 파송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 1 항 담임목사의 역할

1.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가르친다.
2. 세례와 성만찬의 성례전을 주관한다.
3.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GMC의 사역 정책들이 교회에 분포 되도록 권장한다.
4. 교회의 행정 책임자로서 교회의 행정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살피고, 모든 조직들이 연합하여 잘 운영되도록 돕는다.
5. 상담과 심방을 통하여 성도들의 개인적, 가정적, 윤리적, 또는 영적 문제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6. 지역 사회의 관심사 및 교회연합사업에 참여하며, 성도들도 이에 참여하도록하여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노력한다.

제 2 항 담임목사 파송과 자문 과정

담임목사의 사임, 사망, 은퇴 등으로 인하여 궐석인 경우 교회임원회는 목회협조위원회를 통하여 담임목사청빙위원회를 임명하고 GMC와 협력하여 파송과정을 관리한다. GMC 장정에 따라 담임목사는 감독이 파송한다. 자문이란 목회협조위원회가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과 교회 부흥을 위하여 어떤 자질을 갖춘 목회자가 필요한 지에 대하여 감리사와 협의하는 일이고 자문 과정에서 교회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담임목사의 파송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 2 조 평신도대표

제 1 항 평신도대표의 역할

평신도대표는 교회 전반의 사역을 돌아보고 각 사역 활동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기회들과 필요한 내용들에 관하여 교회 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평신도대표는 아래 역할을 가진다.

1. 구역회에서 평신도들이 1년 동안 사역한 활동에 관하여 감리사에게 보고 한다.
2. 신실하고 책임성 있는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인다.
3. 담임목사와 교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수시로 상의한다.
4. 교회의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5. 평신도들에게 신앙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6. 교회임원회, 재정위원회, 인선공천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다.

제 2 항 평신도대표의 선출과 임기

인선공천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3 조 연회대표

제 1 항 연회대표의 역할

연회대표는 교회 평신도를 대표하여 GMC 연회에 참석하고 교회 활동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 연회 전에 할 일

- 담임목사로부터 연회 날짜와 장소를 알아둔다
- 연회 사무실로부터 연회에 제출할 결의안 마감일을 알아두고 과정을 잘 알아둔다.
- 연회에서 준비한 연회 보고서와 회의할 내용이 담긴 책자를 연회전에 입수하여 자세히 검토한다.
- 연회 안에 있는 위원회에 속하여 봉사하게 될 경우 담임목사에게 위원회의 성격, 때, 장소를 미리 알아둔다.
- 연회록과 장정을 확보하여 GMC 구조에 익숙해진다.
- 적어도 다음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알아둔다. (감독, 감리사, 연회여선교회 회장, 연회남선교회 회장, 연회중고등부 회장, 평신도 연회원들)

2. 연회기간 중에 할일

연회대표는 우리 교회에 영향을 미칠 의제들에 대하여 사전에 깊이 연구하고 투표한다.

-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미리 알아두고 매일 연회의 일정표를 따른다.
- 연회 동안에 있는 모든 예배 및 성경공부에 참여한다.
- 연회 시작하기 전이나 회의 후 담임목사와 함께 교회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살펴본다.

3. 연회 후에 할일

- 교회의 사역에 영향을 미칠 연회의 결정사항들이 무엇인지 교회임원회에 보고한다.

- 교회의 선교분담금과 행정적 변화를 가져와야 할 연회의 결정사항들을 재정위원회와 교회임원회에 보고한다.
- 선교분담금과 특별기금에 관계된 연회의 결정사항을 재정위원회에 보고 한다.
- 연회의 결정사항 중에 목회협조위원회와 나누어야 할 일들을 보고한다.
- 연회에서 세운 우선순위 사업과 관련하여 연관된 부서에 보고한다.

제 2 항 연회대표의 선출과 임기

인선공천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조 교회법인대표단

교회는 대외적 활동중 교회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법인대표단을 둔다.

1. 대표 - 담임목사는 법인대표를 맡는다 (자동직)
2. 부대표- 임원회장은 법인부대표를 맡는다 (자동직)
3. 서기- 임원회서기는 법인서기를 맡는다 (자동직)
4. 재무- 재정위원장은 법인재무를 맡는다 (자동직)
5. 재단- 재단이사장은 재단대표를 맡는다 (자동직)

교회법인대표단은 교회임원회를 통하여 임명되며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교회임원회를 대리하여 대외적으로 교회법인을 대표하는 법적 기관이다.

제 5 장 조직

제 1 조 교회임원회

제 1 항 교회임원회의 역할

교회임원회는 법인으로서 교회이사회의 역할을 한다.

제 2 항 교회임원회의 책임

1. 교회 모든 기관의 행정과 운영을 통할한다.
2. 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3. 교회의 예산을 심의하고 채택한다.
4. 교회가 필요로하는 시설과 재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지원한다.
5. 교회와 관계된 모든 법적인 절차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6. 대외적인 법적 활동을 대리할 교회법인대표단을 임명한다.
7. 담임목사와 유급직원의 봉급, 목사관 및 기타 수당에 관계되는 예산을 구역회에 제출한다.
8. 총회, 지역총회, 연회, 지방회 등 교단이 결정한 모든 종류의 선교비를 지원하고, 그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노력한다.
9. 교회의 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10.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든다.
11. 교회의 양육사역, 대외선교사역, 증거사역과 관계되어 있는 사역들을 정기적으로 계획 평가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조달한다.
12.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구역회 기간중에 생기는 임원들의 공석을 보선한다.
13.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회의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임원회를 대신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4. 필요한 경우 교인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15. 임원회 서기는 임원회 의결 사항을 모든 교인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시 이를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 또는 홍보물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3 항 교회임원회 회장

1. 교회임원회 회장의 책임

- 신앙생활에 모범을 보이며, 행정보다는 선교에 먼저 초점을 맞춘다.
- 교회의 기본임무와 교회가 설정한 비전에 초점을 맞춘다.
- 교회임원회를 인도하며, 임원회의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담임목사와 교회 임원들과 상의하여 회의 안건을 준비한다.
- 교회의 모든 부서의 행사들이 잘 조화되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연회나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지도자 훈련에 참여한다.

2. 임원회 회장의 선출과 임기

교회임원회 회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4 항 교회임원회의 조직

1. 담임목사
2. 교회임원회 회장
3. 교회임원회 서기
4. 평신도대표
5. 연회대표
6. 목회협조위원회 위원장
7. 인선공천위원회 서기
8. 재단이사회 이사장
9. 각 부서 부장과 부부장
10. 교구장
11. 속장대표
12. 교회회계
13. 부목사(들)

담임목사와 부목사(들) 그리고 유급직원은 교회임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제 5 항 교회임원회 회의시기

1. 정기임원회- 분기별
2. 임시임원회 - 담임목사 또는 임원회장의 소집요청으로 최소 2 주 전 공표를 통하여 필요시 언제든지 가능

제 6 항 교회임원회 회의운영

1. 교회임원회는 최소한 회장과 서기를 두어 운영한다. 임원회장의 권석시 다른 임원이 회의를 주관할 수 있으며 임원회에 참석한 임원들 중 한 명을 선정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의 진행자를 결정한다. 서기가 권석인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서기를 결정한다.
2. 교회임원회 임원 이외의 다른 교인도 임원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관인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고 투표권은 없다. 의사표시 또는 의견개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신도대표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회의 발언은 평신도대표가 대신하여야 한다.
3. 교회임원회장은 교회임원회 개최 1 주일 전에 동의를 필요한 의제나 의견 개진이 필요한 의제들을 수집 정리하여 임원회 임원들에게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조 인선공천위원회

제 1 항 인선공천위원회의 역할

인선공천위원들은 교인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교회 사역의 필요와 연결시켜 주는 사람들이다.

제 2 항 인선공천위원회의 책임

1. 교인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찾아내고 그들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2. 교인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권거한다.
3.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를 추천한다.
4. 인선공천위원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5.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직분과 책임을 확인하고 각 직분에 대한 직분설명서를 작성한다.

제 3 항 인선공천위원의 선출과 임기

인선공천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 임기로 선출되며, 위원들을 3년조로 나누어 매년 1/3의 위원만 교체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임기를 마치는 위원들은 연임 할 수 없다.

제 4 항 인선공천위원회의 조직

1. 구역회에서 선출된 평신도 9명
2. 담임목사 (자동직)
3. 평신도대표 (자동직)

담임목사를 포함해서 11명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담임목사가 위원장이 되며 평신도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이 서기는 교회임원회와 구역회의 회원이 된다.

인선공천위원회의 모임은 4사분기중 모이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 목사의 요청에 따라서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제 3 조 목회협조위원회

제 1 항 목회협조위원회의 역할

목회협조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교단에서 파송된 교역자는 물론 본교회가 개별적으로 청빙한 목회자들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 주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 목회협조위원회의 회원 구성을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모든 계층을 통하여 잘 전달되고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 계층에서 회원을 추천 임명함으로써 다양성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회협조위원회의 모임은 1년에 분기별로 모이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 목사 또는 목회협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는 수시로 모임 수 있다. 또한, 담임자의 효율적인 목회 활동을 위해 지원하는 부서이다. 담임자 부재시 강단 보충, 교역자의 사례비, 주택, 여행, 휴가, 보험, 연수교육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유급직원 인사를 관장하며 2세 교역자 발굴 및 육성에 힘쓴다. 교회내의 모든 유급자에 관한 사항은 임원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는다.

제 2 항 목회협조위원회의 책임

1. 담임목사, 부목사, 유급직원, 평신도와의 관계에 대해 상의한다.
2. 부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유급직원의 직책설명서를 작성한다.
3.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4. 담임목사, 부목사, 유급직원들과 함께 교회 임원회나 구역회가 설정한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상의한다.
5. 외래강사, 목사 및 유급직원의 연봉, 교통비, 휴가, 건강, 보험, 연금, 주택, 그 밖에 담임목사와 유급직원의 활동과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관하여 의논하여 관계된 부서에 보고한다.
6. 담임목사나 유급직원의 연장교육을 위한 재정을 확보한다.
7. 유급직원 인사와 업무평가를 관장하며 2세 교역자 발굴 및 육성에 힘쓴다.
8. 성직이나 평신도 사역을 지망하는 이들을 구역회에 추천한다.
9. 파송을 위하여 감리사나 감독과 상의한다.
10. 교역자가 갑자기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할 일이 생겼을 때 이를 감리사와 의논하여 처리한다.
11. 목회협조위원회 과정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개인적으로 나누지 않는다.

제 3 항 목회협조위원의 선출과 임기

목회협조위원회 위원과 위원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된다. 선출된 위원들은 3년 임기로 매년 선출되며, 위원회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목회협조위원들을 1년에 1/3 만 교체한다. 임기를 마치는 위원들은 연임 할 수 없다.

목회협조위원회에는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급직원들과 직계가족을 회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목회협조위원회의 역할이 교역자나 유급직원들의 거취와 봉급을 의논하기 때문이다.

제 4 항 목회협조위원회와 다른 위원회와의 관계

목회협조위원들은 교역자와 다른 사역자들이 맡은 일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따라서 목회협조위원회는 교회임원회, 재단이사회, 재정부, 교구부와 가깝게 일한다.

제 5 항 목회협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1. 위원회 회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청장년이어야 한다.
2. 위원회 회원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여성이어야 한다.
3. 평신도대표 (자동직)
4. 부위원장과 서기를 뽑아 운영한다.

제 6 항 담임목사 및 유급직원 협조

목회협조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유급직원들이 사역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조하는 위원회이다.

1. 담임목사와 유급직원의 보수를 매년 검토하고 조정의 필요가 있을시 재정위원회와 상의하고 교회임원회를 통해 제안한다.
2. 목사실과 유급직원들의 사무실, 가구, 집기 등 건전성을 점검한다.
3. 교통비, 연회참석비용, 연장교육비, 외부강사초청비용, 이사비용, 목회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 목회와 직원활동 관련 예산들을 점검한다.
4. 주택보조비, 건강보험비, 사회보장비 (Social Security Tax), 노동자재해보상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등 봉급 외의 보수를 점검한다.
5. 휴가기간을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6. 봉급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수한다.
 - a. 각 연회마다 공정봉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므로 소속연회의 기준한 액수를 지방회나 연회사무실을 통하여 알아본다.
 - b. 우리교회와 비슷한 교회들이 지불하는 대우를 비교해본다.
 - c. 우리지역의 생활비를 고려한다.

제 4 조 재정위원회

제 1 항 재정위원회의 역할

교회의 재정위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관리하면서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조직체이다. 청지기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한다. 교회에는 재정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위원이 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재정위원들은 어떠한 목적과 이유에서 재정이 필요한 지 교회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제 2 항 재정위원회의 책임

1. 교회 재정의 전체를 책임진다(모금, 관리, 지출, 감사).
2. 교회의 재정 방향을 설정한다.
3. 매년 교회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회임원회에 제출한다.
4. 통과된 예산안이 예산 부족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수입 계획을 점검한다.
5. 건전한 재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
6. 청지기의 삶에 합당한 헌금을 하도록 권장한다.
7. 십일조에 대하여 교육시킨다.

제 3 항 재정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재정위원회의 모임은 1 년 중 4 사분기에 모이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 목사 또는 재정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서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재정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재정부장을 맡는다.

제 4 항 재정위원회의 조직

- 재정위원회 위원장
- 담임목사
- 평신도대표
- 연회대표
- 목회협조위원회 위원장
- 재단이사회 이사장
- 교회임원회 회장
- 감사
- 재무서기
- 교회회계
- 기타 임원회가 선출한 사람(들)

담임목사와 유급직원은 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투표권은 없다. 구역회는 추가위원을 선정할 때 청소년, 청장년, 노년 등 각 계층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제 5 조 재단이사회

제 1 항 재단이사회의 역할

재단이사회는 교회의 모든 재산(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한다. 재단이사회는 담임 목사와 상의하여 교회 건물 사용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 매년 교회 재산을 점검한다. 매년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 관계를 점검한다. 그리고 교회의 부동산(교회 건물, 교육관, 주택) 구입 및 건축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시에 이 일들을 시행한다. 이 모든 일들을

시행할 때는 텍사스 주 법이 규정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의 규정대로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 2 항 재단이사회의 책임

1. 교회의 모든 재산(동산과 부동산)을 관리한다.
2. 교회의 모든 기물을 관리하고 재산의 매매, 담보, 저당, 수리, 개수, 증축하는 일을 관리하고 매년 그 내용을 구역회에 보고한다.
3. 교회에 기증된 유증, 기부금, 유산 및 위탁금을 인수 또는 거절한다.
4. 위탁금을 적절하게 투자한다.
5. 교회를 비영리 법인체로 정부에 등록하는 일과 교회와 관계된 법률의 변화가 발생시 교회 내규 문서를 법에 따라 갱신한다.
6. 담임목사와 상의하여 교회건물 사용을 위한 정책을 세운다.
7. 교회와 관계되는 보험을 산다 (예: 건물, 시설, 컴퓨터, 복사기등).
8. 목회협조위원회와 함께 목사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 3 항 재단이사회 선출과 임기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이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들을 3 년조로 나누어 1 년에 1/3 만 교체한다.

이사장과 부이사장과 같은 연조에 들어있어서는 안된다. 재단이사는 모두 법정 연령에 달하여야 한다.

재단이사회의 모임은 1 년에 분기별로 모이는 것이 원칙이나 담임 목사 또는 재단이사장의 요청에 따라서는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제 4 항 재단이사회의 조직과 운영

재단이사회는 구역회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담임목사가 소집하여 이사장, 부이사장, 서기, 회계각 1 명씩 선출해야 한다. 단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5 항 재단이사회와 다른 부서와의 관계

교회에서 재단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사역을 하고 있다.

1. 재단이사회와 구역회

구역회는 GMC 교단의 기본조직이다. 교회의 선교와 사역의 정책은 구역회의 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재단이사는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구역회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활동해야 한다.

2. 재단이사회와 교회임원회

재단이사회 이사장은 교회임원회의 임원이다. 그러므로 재단이사회의 내용을 교회임원회에 알리고 교회임원회의 내용을 이사회에 알리는 교량역할을 한다.

3. 재단이사회와 목회협조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는 담임목사와 유급직원과 관계되어있는 기구이다. 재단이사회는 목회협조위원회위원장과 긴밀한 관계속에서 목사관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제 6 항 유증 및 신탁재산 관리

재단이사회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유산이나 유증물등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일이다. 이 일을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1. 수시로 유증의 조건을 점검한다.
2. 기증자들의 목적에 부합되게 교회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3. 너무 조건이 많은 기증은 처음부터 거절한다.
4. 교단이 계획하고 있는 유서, 유산 대책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5. 많은 액수의 기금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관리한다.
6. 유증에서 나오는 수입은 교회 경상비 보다는 선교활동에 사용한다.
7. 많은 유증때문에 교회 현금생활을 파괴할 위험이 없도록 조심한다.

제 7 항 보험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보험을 살 때는 재단이사회에서 모두 관리한다.

1. 매년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보험을 평가한다.
1. 소방서에 연락하여 교회 건물의 안전성을 점검한다.
2. 교회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기물을 점검한다.
3. 적절한 보험을 들기 위하여 매년 재산과 기물을 점검한다.
4. 보험을 들때는 두개 이상의 보험회사를 알아본다.
5.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비싼 물품들을 위해 보험이 있는지 점검한다.

제 8 항 부동산구입 및 처분, 교회건물, 교육관, 목사주택 건축

교회건물이나 교육관 또는 목사주택을 새로 건축하거나 증축할 필요가 있다면 건축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여 교회건물의 필요성, 위치, 설계, 재정출처 등을 연구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9 항 법적 책임

사소한 일이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길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요청한다. 보통 아래와 같은 일이 생길때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1. 법과 관계된 서류를 받았거나 법원 또는 행정부에 등기 내지 출두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일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3. 유서, 유증, 증여등의 서류를 검토하고 작성할 경우
4. 교회를 법인체로 등기할 경우

제 10 항 재단이사회장의 선출과 임기

재단이사회장은 재단이사회 위원중의 한사람을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제 6 장 부서조직

제 1 조 재정부

제 1 항 운영의 원칙

재정의 운영 및 관리는 다음의 사항들을 원칙으로 하여 시행한다.

- 1) 청지기적 사명: 교회와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임을 언제나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충성된 종으로써 지혜롭게 관리, 운영할 책임을 갖는다.
- 2) 지출의 균형: 교회 운영비의 지출 비율은 목회방향에 따름과 동시에 각 부서에 균형있게 지출되도록 한다.
- 3) 총액표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당회기년도 예산 및 결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4) 투명성: 재정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회임원회에 보고하고 교인들의 조회 요구가 있을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없는 한에서 재정부는 최대한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5) 재정구조의 건전성: 재정구조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교회 일반업무 달성을 위한 차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건물 증,건축과 같은 특별 사업에 따른 차입에 대하여는 교회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계기간별 예산내에서만 재정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3. 잉여 자금이 발생할 경우 다음회계년도의 일반계정으로의 이월을 원칙으로 한다.
- 6) 문서화: 재정운영에 대한 모든 기록 및 증빙은 문서 및 컴퓨터용 백업 파일로 보관되어야 한다.
- 7) 기능의 분리: 재정운영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재정의 승인, 집행, 기록, 감사의 기능은 각각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제 2 항 수입

- 1) 교회의 수입은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 헌물 또는 기타 수익으로 한다.
- 2)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교회로 유입된 헌금 또는 헌물에 대한 환급이나 반환은 허용 되지 않는다. 단 특별 지정헌금 (restricted offering)에 있어서 그 용도의 전용이 필요할 시 교회는 반드시 기부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며 기부자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재정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 3 항 회계년도

본 교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 월 1 일 부터 익년 12 월 31 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항 회계의 운영 및 관리

재정운영에 관한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운영, 관리하되 결산시 구분회계 보고서와 통합회계 보고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 1) 일반회계: 교회의 일반적인 수입을 통한 재정업무에 관한 회계.
- 2) 특별회계: 교회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입 (예; 지정헌금등)을 통한 재정업무에 관한 회계.
- 3) 재정보고: 분기별로 교회임원회에 수입과 지출에대한 재정보고를 실행한다.

제 5 항 재정 관련 서류 보존 기한

교회는 재정관련 서류들에 대하여 당 회계년도 종료일로 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1) 회계년도별 결산서: 영구
- 2) 회계 장부 및 전표: 10 년
- 3) 자금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 5 년
- 4) 보조 장부 및 기타: 5 년

제 6 항 예산

연간 예산은 각 부서로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수집하여 심의, 검토후 최종 예산안을 수립하여 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동의를 얻은 후 교회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는다.

제 7 항 재정부장

- 1) 재정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받아 교회임원회에서 선임한다.
- 2) 재정부장은 예산의 적정하고 균형있는 집행에 힘쓰며 재정 상태에 대한 제반 업무를 정확히 기록, 보고 하며 재정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용을 할 의무가 있다.
- 3) 재정부장은 업무 중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공식적으로 유폐할 수 없다.

제 8 항 부서운영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제 2 조 건물관리부

제 1 항 건물관리부의 역할

건물관리부는 교회 임원회의 필요시 지시에 따라 교회의 기물 및 부동산을 관리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건물관리부는 교회 재산을 관리하여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주 정부의 법이나 교회법에 합법한 절차를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 2 항 건물관리부의 책임

1. 모든 교회 시설물을 관리하고, 관련된 법적인 일을 처리하며 수리, 보존한다.
2.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최고,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유형의 교회는 거룩히 성별된 곳으로 일반적인 건물 이상의 신앙적인 의미를 갖는다.
 - a. 교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다.
 - b. 교회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활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 c. 교회당은 우리의 신앙을 외적으로 증거하는 곳이다.
 - d. 교회당은 곤한 인생들의 피난처요, 안식처요, 위로처로서 천국의 모형이다.
 - e.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성물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세로 교회당과 부속물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 3 항 관리의 대상

1. 예배처소 관리: 온 회중이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조건들을 온전히 구비토록 한다.
2. 부속 건물 관리: 친교실, 부엌, 교육관, 정원, 화장실, 놀이터 등
3. 건물의 수리 보완: 장기, 단기 계획
4. 비품 관리: 교회 비품 항목을 작성하고 정비하며 종류별, 용도별, 위치 별로 계획성 있게 확인하여 점검한다. 많은 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제 4 항 건물관리부장의 선출과 임기

건물관리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3 조 예배부

제 1 항 예배부의 역할 및 책임

1. 담임목사를 도와 모든 예배가 성경적이며 신앙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구한다.
2. 위원은 필요한 만큼 둔다.
3. 계절에 따라 예배시간 엄수, 환경미화 등을 점검하고, 성례에 따른 제반사항을 필요에 따라 준비한다.
4. 매월 예배위원을 확보, 통보하며 준비 시킨다. 예배의 순서(기도, 헌금)를 맡은 사람은 앞 좌석에 앉아 준비하도록 한다 (맡은 자의 마음의 자세, 신앙적 자세, 실제적 준비: 마이크, 꽃, 촛대, 성만찬 등).

5. 예배를 도울 수 있는 찬양 및 간증, 기타 프로그램을 계획하며 담임목사와 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6. 정기예배의 중요성을 교인들에게 교육, 훈련한다.
7. 성가대와 긴밀히 연락하여, 절기에 맞는 성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건의한다.

제 2 항 예배부장의 선출과 임기

예배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4 조 교육부

제 1 항 교육부의 역할

우리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양성하시기 위하여 가르치셨다. 신앙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어린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해 좋은 가르침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부의 책임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육부원들은 누구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 책임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위원들 자신이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교육부는 교회 교육방침을 수립하고 수정한다.

제 2 항 교육부의 책임

1. 교육 행정과 프로그램을 책임진다.
2. 교육부 회의를 인도한다.
3. 가르치고 배우며 영성훈련을 위한 계획과 전략을 세운다.
4. 교육프로그램을 교인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한다.
5. 교육부 예산을 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리한다.
6. 주 중에 진행되는 성경공부반이나 특별활동반을 장려한다.
7. 기독교 교육을 위한 비전을 설정한다.
8. 교사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의 역할을 한다.
9. 교육부 사역자들과 함께 교육부 사역을 돕고 협력한다.

제 3 항 교육부장의 선출과 임기

교육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5 조 통합선교부

제 1 항 통합선교부의 역할

선교는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출발점이다. 선교는 하나님이 세상에 임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증표를 증거하는 것이다.

제 2 항 통합선교부의 책임

1. 선교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2. 구역회, 교회임원회의 회원이 된다.
3. 선교화 관계된 예산안을 교회임원회에 제출한다.
4. 지역사회와, 국내외에서 요구하는 필요 사항을 조사하고 선교사업을 통하여 그러한 필요에 응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5. 선교를 통하여 교회와 세계를 연결하여 준다.
6. 국내외에서 봉사할 선교사 지망자를 발굴한다.
7. 장, 단기 국내외 선교여행을 계획한다.
8. 선교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자료를 제공한다.
9. 세계선교비, 특별선교비, 특별선교헌금을 지원한다.
10. 연회와 지방회의 선교활동을 지원한다.

제 3 항 통합선교부의 구성

1. 해외선교부
2. 국내선교부
3. 지역선교부
4. 의료선교부

제 4 항 선교부장의 선출과 임기

선교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6 조 새가족부

제 1 항 새가족부의 역할 및 책임

1.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가족들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을 한다.
2. 새가족이 본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정착상황을 점검하여 분석한다.
3. 각 예배시 안내 및 영접위원을 정하여 운영한다.
4. 새가족환영회와 같은 새가족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한다.

제 2 항 새가족부장의 선출과 임기

새가족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7 조 바나바부

제 1 항 바나바부의 역할 및 책임

1. 초신자 여부를 불문하고 교회에 처음 방문하는 새가족들을 일대일로 연결하여 보살피줌으로써 낯설고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고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줌과 동시에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2. 숨어있는 평신도 일꾼들을 발굴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돕는다.
3. 목회자, 교역자, 속회등을 연결하여 주는 교량역할을 한다.
4. 새가족의 정착상황을 분석하여 점검한다.

제 2 항 바나바부장의 선출과 임기

바나바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8 조 홍보부

제 1 항 홍보부의 역할

홍보부는 우리 교회의 활동상황과 현황을 주보, 뉴스레터, 신문, 방송, Web Site 등을 통해 교우들에게 알리고, 지역사회에 교회행사를 적극 홍보한다.

제 2 항 홍보부의 책임

1. 외부에 교회를 홍보한다.
2. 교회의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를 홍보한다.
3. 교회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4. 교회의 뉴스레터를 편집하고 관리한다.
5. 교회내의 다른 위원회와 기관들, 그리고 교인들이 원활한 홍보(공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아이디어와 자료, 기술을 제공해 준다.
6. 지역사회의 매스 미디어와 관계를 맺는다.
7. 라디오 및 신문사에 보낼 홍보 내용을 정리한다.
8. 교회의 위기를 관리하는 회원이 된다.
9. 교회에서 재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한다.

제 3 항 홍보부장의 선출과 임기

홍보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9 조 체육부

제 1 항 체육부의 역할 및 책임

1. 성도들의 친교와 건강을 위한 체육활동행사를 주관한다.
2. 타교회와의 체육친교를 주관한다.
3. 체육활동 소그룹을 활성화한다.

제 2 항 체육부장의 선출과 임기

체육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10 조 음악부

제 1 항 음악부의 역할 및 책임

1. 음악지도자를 발굴하고 양성한다.
2. 음악과 예술 등을 통하여 예배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3. 성가대와 찬양대를 양육하고 관리한다.
4. 교회의 음악행사를 주관하고 계획한다.

제 2 항 성가대원과 찬양단원의 책임과 의무

1. 모든 예배와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
2. 모든 준비와 연습 등 모임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
3. 향상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경건생활에 힘쓴다.
4. 모든 지도자들의 인도에 순종하여 따르며 충성한다.
5. 대원(단원)들 서로 간의 화목과, 그리스도 사랑안에서의 하나됨을 위하여 헌신하며 노력한다.

제 3 항 음악부장의 선출과 임기

음악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11 조 봉사부

제 1 항 친교봉사부의 역할 및 책임

- 교회내외의 모든 친교봉사활동을 돕는다.
- 주방시설을 관리한다.
- 주방사역팀을 조직하여 주일예찬음식 및 각종 교회행사 음식을 준비한다.

제 2 항 친교봉사부장의 선출과 임기

친교봉사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12 조 교구섬김부

제 1 항 속회의 역할과 조직

속회는 요한 웨슬리가 물려 준 GMC 의 영적 유산 중의 하나로서 교회 내의 작은 공동체라 말할 수 있다.

1. 각 속회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4-7 가정으로 이루어진 속회가 가장 이상적이다.
2. 속회는 속장 1 명, 속교사 1 명, 속도원으로 구성된다.
3. 속회 수가 많을 경우에는 전체 몇개의 속회를 교구로 묶고, 그 교구를 섬길 교구장을 세운다.
4. 속회지도자들은 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 2 항 목적과 기능

1. 속회는 교회내의 작은 공동체로서 성경공부와 기도, 영적 교제, 성도들의 돌봄과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임이 되어야 한다.
2. 속회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적인 선봉장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3. 속회는 교회내의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자원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제 3 항 속장의 의무와 자격

1. 속장은 세례 받은 지 3 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속장은 속지도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속장이 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교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들을 속회에 잘 전달하여 속도원들이 모든 사역에 잘 참여하도록 인도한다.
4. 정기적인 모든 예배와 특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5. 속회의 모든 상황을 교구장과 의논하고 상담해야 한다.
6. 속장은 속회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7. 속장은 새로운 속장 후보를 찾아서 양육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제 4 항 속교사의 의무와 자격

1. 구원의 복음을 잘 알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2. 가르치기 보다는 나눔을 인도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지속적인 성경공부의 배움을 통하여 교사의 자격을 향상 시켜야 한다.
4. 속장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속도원들을 양육해야 한다.

제 5 항 교구장의 의무와 자격

1. 교구장은 세례 받은지 5 년 이상 된 자라야 한다.
2. 속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3. 교회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역들을 속장과 함께 의논하여 교구에 속한 속회들이 연합하여 잘 감당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속장과 속교사들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겨야 한다.
5. 교구내의 모든 중요한 상황들을 교구 담당목사에게 보고하며 의논해야 한다.
6. 교구장은 새로운 교구장 후보를 찾아서 양육시켜야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

제 6 항 교구섬김부장의 선출과 임기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13 조 브릿지미니스트리부

제 1 항 목표

We will provide spiritual experiences that challenge and empower our 2nd generation children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their own bible learning to accept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We will cultivate a secure, supportive and nurturing environment of Christian values where our 2nd generation children feel safe and valued.

We will provide support to all our 2nd generation children to retain in church after college.

제 2 항 정책

Hire a full time EM pastor who will be bilingual in English and Korean (both at the level of native speaker competence) and will run all EM areas.

Attract, recruit and retain highly qualified associate pastors and pastoral staff (praise team leaders).

Build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across all operational and personnel areas.

Provide safe and secure facilities.

Develop common best practices to aid in grade level transitions.

Identify and define each individual's unique spiritual gifts and abilities, and then develop resources and programs to support individual paths.

Expand our culture of compassionate service through Christian values.

제 3 항 운영

브릿지미니스트리부 부장은 인선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역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1 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부서의 운영은 최소한 부장, 부부장, 서기 및 회계의 임원을 두어 운영한다. 다만 서기와 회계는 겸임할 수 있다.

제 7 장 부칙

제 1 조 심의규정

제 1 항 예외규정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GMC 장정에 따르며 통상규례에 준한다. 통상규례에 유권적 해석이 필요한 때에는 교회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 항 내규 개정 또는 수정

1. 전안 개정 또는 수정의 요구가 있을 때, 교회임원회는 이를 접수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 그 안을 처리한다.
2. 내규 개정은 교회임원회에서 하며, 참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3. 상기 규정 이외에 교회임원회는 매 7 년마다 정기적으로 내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할 수 있다.

제 3 항 발효

본 내규는 교회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2/3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와 동시에 그 효력을 발한다. 기타 개정 및 수정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한다.

제 2 조 각 부서 내부 규정

각 부서는 본 내규와 GMC 장정이 규정한 원칙 안에서 각자의 사역 활동에 필요한 부서 내규를 제정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 3 조 의결정족수

교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단 의결정족수에 관하여 특별히 명기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의 의결정족수를 따른다.

제 4 조 교인총회와 교인투표

교인총회는 GMC 감리사의 허락을 받아 GMC 장정이 정한 바에 따라 개최할 수 있으며 의결 사항이 있을시 정회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인투표는 교회임원회의 관리 아래 권사 또는 장로의 선출과 같은 교회 내규가 정한 의결 사항에 대하여 교인의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정회원만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